

루마니아 經濟現況과 主要改革課題

金光錫
秉柱東
高日東

이 보고서는 대우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머리말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기업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구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기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1989년 차우세스쿠(Ceausescu) 공산 독재정권의 붕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나라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해서 여타 동구국가의 경험을 교훈으로해서 사유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제도와 외환 및 무역정책의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경제불안정, 금융 및 자본시장의 미발달과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GATT, WTO로 이어지는 국제무역기구의 회원국이다. 이나라는 90년대이후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재원조달을 위해서 국내의 저축증가에 힘쓰기보다는 외국인 투자 및 자본유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마저 있는 것 같다. 이 나라와 한국과의 경제교류도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 나라의 자동차, 조선, 가전, 은행 등 여러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 통상산업부는 루마니아 경제개혁을 돋기위한 경제자문단의 파견을 본 연구원에 요청한바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자문단의 파견에 앞서서 루마니아 경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97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 나라 수도 부카레스트를 방문했던 사전조사팀의 출장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금융부문은 김병주교수(서강대), 사유화 관련정책은 고일동 연구위원(KDI) 그리고 거시경제동향과 무역·외국인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는 김광석 본 연구원 자문위원이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루마니아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는 관련 업계는 물론 정책당국에도 많은 참고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단

의 루마니아 출장을 후원해준 대우그룹과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준 루마니아 주재 백낙환 대사와 윤종곤 참사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기구(KOICA)는 1997년 12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사공 일

한국 국제개발협력기구(KOICA)는 1997년 12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사공 일

한국 국제개발협력기구(KOICA)는 1997년 12월

目 次

I . 루마니아 概要	7
II . 최근의 巨視經濟 動向	9
III . 私有化 政策의 현황 및 과제	14
IV . 金融制度의 현황과 정책과제	26
V . 무역과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35

I. 루마니아 概要

- 루마니아(Romania)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1배에 해당하는 237,499km²이며 경작지가 약 64%에 이른다. 인구는 1997년 1월 현재 22.6백만명이며 생산활동가능 인구의 문맹율은 2%에 불과함.
- 89년 12월 革命으로 차우세스쿠(Ceausescu) 공산독재체제의 몰락 이후 96년 11월 선거까지 이 나라에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일리에스쿠(Ilieșcu)를 중심으로한 구공산주의 계열의 左翼 세력이 계속 집권한 관계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각종 개혁이 지연되었으며 96년 11월 선거에서 중도우익세력이 집권한 이후부터 각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二元執政制下에서 대통령(Constantinescu)과 총리(Ciorbea)는 다수당인 민주연합(CDR)에서 맡고 있으나 현정부는 중도성향의 민주사회당(USD) 및 혁가리민족이익을 대변하는 혁가리 민주동맹(UDMR)과 연정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신정부 출범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일리에스쿠 집권기간동안의 개혁지연에 대한 국민적 피로현상(reform fatigue)이 확대된 상태임. 특히 신정부 출범당시 내세운 NATO 및 EU가입이 무산된데 따른 국민적 좌절은 신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집권연정내의 각 정파간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지분확보를 위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 정부는 각종 개혁작업의 자체, 부처간 정책조정의 난항, 개혁방향의 일관성 결여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루마니아 정부는 90년대초 이후 사유화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환 및 무역제도를 자유화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음.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루마니아의 (1) 私有化 政策의 현황과 과제, (2) 금융제도의 현

황과 정책과제, (3) 무역과 외국인 투자관련정책 및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함. 단, 이러한 논의대상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루마니아의 최근 거시경제동향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루마니아 방문기간중 입수할 수 있었던 정부발표 인쇄물과 주로 해당 정부부처관리들과 중앙은행 간부들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 둠. 그런데 아직 인플레율이 높고 또한 地下經濟의 비중이 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루마니아 경제에 관한 본 보고서는 루마니아 경제에 대한 하나의 편향적인 보고에 불과할지도 모름. 따라서 루마니아의 특정경제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위해서는 해당부문 전문가의 어느정도의 장기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루마니아 정부에서 한국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분야는 개혁위원회(Council for Reform) 산하의 국가경제예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Forecasting)에서 하고있는 거시경제예측분야와 재무부 감독하에 있는 보험업 관련분야임. 한국인 計量經濟學者의 파견의 경우 과거에 파견되었던 祥明女大 白雄基 교수의 재파견을 희망함. 그외 분야에 대한 한국인 전문가의 자문요청은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없음. 사실 루마니아는 私有化 政策을 他東歐國家의 경험을 교훈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제도(보험업 제외)와 외환·무역정책은 대체로 EU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분야에는 한국인 전문가의 자문이 불필요 할것으로 보임.

II. 최근의 巨視經濟 動向

1. 경제성장

- 불변가격기준 GDP성장율은 92년까지 負의 수치를 기록한 후 93년부터 正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96년에는 4.1%를 기록함. 그러나 97년에는 -4.5%라는 負의 성장율을 시현하고 98년부터 다시 완만한 正의 성장을 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96년의 GDP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095,154억ROL(루마니아화폐: lei)이며, 연평균 환율을 적용한 환가액은 355.2억\$ 임. 동년의 1인당 GDP는 1,571\$ 임.
- 96년중 粗投資額(재고증가포함)은 GDP의 25.4%에 이룸.

2. 산업구조

- 96년 GDP중 농업부문, 공업부문과 SOC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19.2%, 36.0%와 44.8% 였음.
- 동년의 GDP중 민간부문에 의한 부가가치 비중은 52%였음(90년에는 16.4%). 민간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산업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즉 농업부문 87%, 공업부문 24%, 건설, 상업 및 기타서비스부문 71-75% 등.
- 97년 전반기중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약 52%를 차지함.

3. 가격자유화와 물가

- 석유제품과 기타 에너지가격 그리고 일부 농산물가격은 97년초까지도 정부의 가격 규제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현실화되고 자유화 되었음.
- 소비자 물가지수는 91~93년간에는 연평균 약 240%의 상승율을 기록했으나 94년부터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서 96년에는 연평균 기준으로 39%로 낮아짐. 그러나 97년에는 前政權에 의한 선거시의 통화팽창, 가격자유화와 환율자유화 등으로 인플레율이 다시 가속화되어 연평균 기준으로 1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월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7년 4월부터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여 9월에는 3%로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98년에는 인플레율이 30%로 낮아지고 그후 계속 안정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국내 인플레율 하에서도 은행여수신 금리를 인플레율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해외자본 도입에 악영향을 상쇄시키고 있음(일반가계의 은행저축은 거의 없다고 함으로 국내 저축 장려 목적은 아니라고 봄).

4. 외환자유화와 환율

- 97년초에 그전의 사실상의 외환통제에서 외환거래 자유화가 단행됨. 과거에 시행하던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IMF 8조국에 가입을 목적으로 모든 경상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토록 함. 그러나 수출업자는 외화수입을 자기계좌에 예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는 아직 미화 500달러 이상의 환전은 허용치 않음.

- 현재 환율은 變動換率制下에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며 1日 변동폭(band)의 제한도 없음.

- 97년초 외환자유화와 환율제도 개혁에 따라 루마니아통화 레이(lei)는 96년말이후 현재까지 약 93%정도 평가절하됨. 즉 환율은 96년말 현재의 4,035lei/\$에서 97년 11월 중순에는 7,800lei/\$로 변동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절하율은 동기간중의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기준)보다는 훨씬 낮은데 이것은 급속한 해외자본 도입으로 인해서 lei貨가 아직 과대평가 되고 있음을 나타냄.

5. 고용 및 임금

- 1996년 현재 노동력은 전체인구의 41.6%에 해당하는 약 9.4백만명임. 그중 취업자는 8,742천명이므로 失業率은 6.6%였음. 그러나 실업률은 97년부터 약1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노동력과 취업자수는 90년대초이후 계속 약간씩 감소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대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수준은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됨. 1997년 11월 현재 1인당 평균임금수준(세후)은 약 US\$119 임.
- 한편 정부는 소득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보호와 고소득층의 지나친 임금상승 억제를 기하고 있음.
 - 97년 전반기의 최저임금은 US\$30 였는데 매 6개월마다 조정토록 함.
 -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60%인데 이 최고세율의 적용대상은 총소득 약 US\$300대에서 출발하고 있음.

- 外見上 낮은 평균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企業이 부담하는 실제노동비용은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및 소득세 부담으로 비교적 높음. 그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은 조세후 순수취 임금기준으로 노사협의가 되는 것이 관례화 되고 있기 때문임.
 - 사회보장비 부담율은 형식상 기업측 부담이 총임금의 24%이고 피용자부담은 3%이나 사실상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사업보험 기여율의 경우는 기업과 피용자의 부담이 각각 5%와 1%로 되어있으나 이것도 사실상 모두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총소득(세전)이 약 US\$300에도 60%의 최고세율이 부과되고, 또한 총소득의 33%에 달하는 제사회보장 부담금도 지출해야 하므로 세후임금 US\$150 수준의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그보다 3.3배 높은 US\$499에 달하는 총임금 코스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함.

6. 무역, 국제수지 및 외채

- 96년중 상품수출은 약 82억\$에 이른 반면에 수입은 104억\$에 달하므로 무역수지는 약 22억\$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명목수출은 1991-96년간 연평균 약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입은 보다 높은 기준수치에서 출발해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나타내므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오히려 증가함.
- 90년초이후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되어 왔는데 96년중의 수치는 약 23억\$ 수준이었음.
- 96년말 현재의 총대외준비금(金 제외)은 약2개월분의 총경상계정 지출액에 해당함.
- 96년말 현재의 총외채는 약 85억\$였으며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은 총경상계정 수입의 14.8%에 달함.

7. 국내저축 동원문제

- 장기적으로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저축의 증대가 중요할 것이나 해외 자본도입에만 역점을 두고있는 관계로 국내저축에 관한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조투자수치(재고증가 포함)에서 상품 및 용역수출입 차액를 공제하여 총국내저축 수치를 구해보면 96년중의 총국내저축은 GDP의 1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내저축은 아직 조투자(GDP의 25.9%)의 약 78%를 자금지원 함으로서 해외저축(순외자도입)보다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III. 私有化 政策의 현황 및 과제

1. 사유화의 법적 근거와 관련기구

- Iliescu 집권 초기부터 사유화계획이 발표되고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인 개혁방향의 불확실성과 사유화 프로그램간 일관성의 결여로 구체적 성과는 미진한 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 루마니아에서 사유화는 1991년 「국영상업회사(state-owned commercial company)의 사유화에 관한 법률 58호」(Law 58)가 제정·발효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992년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됨.
 - 그 밖에도 사유화에 관련된 법규로서는 법률 15호(1990), 법률 77호(1994), 그리고 법률 55호(1995) 등이 있으며 또한 사업장의 위치,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관리, 영업이익세, 석유채굴, 통신, 철도수송, 국가독점 등에 관한 24개의 법률과 34개의 시행령 및 규칙 등도 사유화와 간접적인 관련을 가짐.
- 사유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① 「조정, 전략 및 경제개혁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Coordination, Strategy and Economic Reform) ② 사유화청(National Agency for Privatization) ③ 국유재산기금(State Ownership Fund) 등 3개의 기구임.
 - 이 밖에도 루마니아 개발청(Romanian Agency for Development)과 구조조정청(Restructuring Agency) 및 5개의 사유재산기금(Private Ownership Fund)도 사유화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
 - 산업부(Ministry of Industr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수송부(Ministry of Transport) 등 경제관련 부처도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사유화 업무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조정, 전략 및 경제개혁을 위한 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로 지칭)

는 경제 및 사회개혁을 위한 거시적 전략의 수립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개발, 각 개혁 프로그램간, 혹은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 기능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음.

- 개혁위원회는 그 산하에 구조조정청(Restructuring Agency)을 두어 사유화 전 단계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감독
- 따라서 개혁위원회는 비단 사유화 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관련 법규의 입안 및 법규간 상충적인 요소의 조정, 상업회사(commercial company)나 자율기업(regies autonomous)의 구조조정 및 파산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도 담당함.
 - * 상업회사(commercial company)란 과거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된 기업을 말하며 사유화 이전 단계에서 지분은 국유재산기금(SOF)과 사유재산기금(POF)에 배분되었음.
 - * 자율기업(regies autonomous: 이하 RA로 지칭)이란 철도, 수송, 정유 등 국가의 기간산업부문의 공기업으로서 당초에는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 와서 주식회사 형태의 전환이 시작되어 사유화 대상에 포함.
- 사유화청(National Agency for Privatization: 이하 NAP로 지칭)은 사유화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과 함께 사유화 추진기구의 활동을 지도·통제하기 위해서 1991년에 처음 조직되었음.
 - NAP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각종 전략과 개발계획, 그리고 정부소유 상업회사의 사유화 추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하며 각료회의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국유재산기금(State Ownership Fund: 이하 SOF로 지칭)은 정부의 부서가 아닌 독립된 공공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당초 정부소유 상업기업들의 지분 중 70%를 할당 받은 후 이를 관리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역할을 담당함.
 - 따라서 동 기금은 일종의 국영 지주회사(National Holding Company)

- 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정부를 대리해서 기업의 법적조직변화, 회생 조치, 청산 및 판매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함.
- 1991년에 처음 조직되고 199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유재산기금은 1999년 7월 1일을 기해서 그 역할이 종료될 예정이며 사유화되지 않은 지분은 별도의 기구에 의해서 인수될 계획임.
- 사유재산기금(Private Ownership Fund: 이하 POF로 지칭)은 루마니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사유화(mass privatization)의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금으로서 전국을 5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하나씩 설립되었음.
 - 1992년에 설립된 POF는 RA를 제외한 루마니아의 상업기업들 전체 지분의 30%를 이양 받은 후 공공기금의 형태로 유지되었으나 1996년 9월을 기해서 상호기금(mutual fund)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였음.
 - * POF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대량사유화 관련 부분을 참조할 것.

2. 1992~96년간의 사유화 추진방식

2.1 국영기업 지분의 배분

- SOF 및 POF를 통한 본격적인 사유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2~93년 기간동안에 NAP에 의한 시험적인 사유화계획(pilot program)을 추진
 - NAP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된 사유화 방법은 여러 산업부문에 속하는 21개 중소규모의 상업기업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지분매각으로 획득한 수입은 110억 lei 정도였음.
- 본격적인 사유화가 추진되기 이전에 우선 SOF 및 POF가 설립되고 양 자간 국영기업의 지분 배분이 이루어졌음(1992년).
 - 초기 시험적 사유화 계획당시에 매각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6,280

개의 상업기업들은 먼저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이들 기업 주식의 70%는 SOF의 소유로 전환되고 나머지 30%는 5개의 POF의 뜻으로 전환되었음.

- SOF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1996년 이전까지는 주로 MEBO(종업원 및 경영진 인수), 혹은 현금매각을 통해 사유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POF가 소유한 지분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량사유화의 대상이 되었음.

2.2 대량 사유화(mass privatization)

- POF소유 지분은 1995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전되었는데 그 방식은 대체로 체코나 폴란드의 바우처(voucher)에 의한 대량 사유화(mass privatization)방식과 유사하며 구체적 절차와 방식은 다음과 같음.

- ① 루마니아 정부는 18세 이상의 전체 성인남녀들에게 2회에 걸쳐서 POF가 소유하고 있던 상업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였음.
 - 먼저 1992년에는 「재산권증서」(Certificates of Ownership)로 지칭되는 국영기업지분 인수증서가 발행되었으나 거의 사용되지 못했고 1995년에 다시 「등록 사유화쿠폰」(Registered Privatization Coupons)으로 지칭되는 지분 인수증서가 발행되어 1995년 대량 사유화시 양증서를 병행해서 사용.
- ② 2종의 증서는 개인이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 상호기금의 역할을 하게 될 POF의 주식과도 교환이 가능

- 대량사유화 대상 기업으로서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3,800개 정도의 기업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는 초기에 약 800개, 그

리고 나중에는 약 2,000여개 정도의 기업에 국한되었음.

- 사유화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전체 주식 중 최고 60%까지만 재산권 증서(혹은 쿠폰)로 매입이 허용되며 적어도 40% 이상은 현금구매를 원칙으로 하였음.
- 증서로 구입하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균형가격(market-clearing price)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1996년 중반까지 전체 국민들에게 발행된 총 증서 중 90%가 처분됨.
- 1996년 9월을 기해서 POF는 상호기금(mutual fund)으로 형태가 변경된 이후 자체 관리하의 상업기업 주식은 주식시장이나 장외(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2.3 SOF에 의한 사유화

- 전체 상업회사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SOF가 1996년까지 추진한 사유화 방식은 주로 MEBO(management/employee buy-out: 경영진 및 종업원 인수) 혹은 직접 협상(direct negotiation)방식이었음.
 - MEBO는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협상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전체적인 규모로 보아 MEBO에 의한 사유화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접협상에 의한 사유화의 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였음.
- MEBO는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종업원 및 경영진은 「종업원연합」(Employee Association)을 구성한 후 이를 통해 자사 주식을 SOF로부터 매입
 - 종업원 및 경영진의 자사 주식 매입자금은 금융기관의 대부를 통해서 조달되었으며 장기분할 상환(10년)이 허용됨으로써 원리금은 주

로 기업의 미래 영업이윤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이었음.

- 1992년 이후 1994년까지 연간 약 200%, 그리고 1995년 이후에도 연간 30%의 인플레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급격히 감소.

- 그러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의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됨.

- 루마니아의 MEBO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첫째, MEBO대상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만 특혜가 제공되고 일반 국민들은 소외된 점, 둘째,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수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점, 셋째, 사유화된 기업의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넷째, 주식의 과잉분산으로 인한 기업 의사 결정의 지연, 다섯째, 종업원이 주주역할을 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 수 있음.

2.4 기업의 구조조정

- 루마니아에서도 사유화는 상업화 후 구조조정청의 감독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조건하에 존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사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루마니아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보조금의 삭감을 통한 경쟁압력의 강화, 시장원칙에 입각한 금융배분, 가격자유화 및 수입제한의 완화 등과 같은 시장경제적 규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이용

- 1993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혁위원회 산하에 구조조정청을 설립하였음.

* 구조조정청은 EU-Phare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음.

- 그러나 계속되는 고인플레이와 거시경제적 불안정, 가격자유화의 부진, RA의 법인화 및 상업화의 지체, 금융기관의 사유화 부진과 자본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대규모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은 1996년까지 큰 성과를 보지 못했음.
- 1995년 3월 파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동 법률은 대규모 RA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3. 신정부 출범(1997년 2월)후의 사유화 정책과 추진현황

3.1 제도적 개혁조치

- 1997년 2월 신정부 출범이후 보다 적극적인 사유화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음.

①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와 명확한 역할분담.

- 유사 기능을 갖는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의사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유화 관련 기구의 중복기능을 제거
- 특히 NAP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SOF나 상호기금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됨.
- 그 결과 정책결정의 기준이나 책임소재가 다소 명확해진 측면도 있으나 관련기관의 중복기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상당한 반발에 봉착

② 지금까지 사유화의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각종 법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③ 은행 및 보험회사의 사유화 계획

- 시장기능에 의한 사유화의 촉진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은행 및 보험회사의 사유화를 추진
- 특히 일반 생산기업의 사유화가 추진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이 문제였음.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극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④ SOF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약간의 변화

- 당초 SOF는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결정을 피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 감시하에 두었으나 정부의 관리하에 두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임.
- 또한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각 지방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기업의 사유화는 각 지방단위의 SOF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분권화.

3.2 구조조정 노력의 확대

- 르마니아에서도 기업의 사유화는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
 - 첫째, 고인플레 등 불안정한 거시경제적 상황, 금융부문의 자원배분 기능 저조, 가격자유화의 지체 등에 비추어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결여되었음.
 - 둘째, 대부분의 지역이 대규모의 단일기업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은 바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파산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기업은 파산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
 - 특히 RA의 경우 종전까지 파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

문에 실제로 동법률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겠음.

- 루마니아에서 현재 가장 핵심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RA이며 1997년 루마니아 정부는 「긴급명령 제 30호」를 발동하여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동 긴급명령은 RA들을 「국영회사」(national company)로 그 형태를 전환함으로써 일단 상업화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착수
 - 상업화단계에서 발행된 RA의 주식은 관련된 정부부처(과거 이를 기업을 관리하던 중앙정부 부처), RA소재 지방정부(RA가 지방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배분되며 나머지는 SOF에 귀속시킴.
 - RA의 지분을 인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동 주식들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수입은 자체 예산으로 활용
- 그러나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거시경제적 불안정이나 금융부문의 기능저조 등)로 인해 큰 진전없음.
 - 또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RA의 처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예를 들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구조조정은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방경제가 특정 RA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하에서 구조조정 노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 때문에 부실기업의 청산은 상당한 난항에 봉착할 위험이 상존
 - 물론 RA의 주식 일부를 지방정부에 할애하여 동 주식의 매각자금을 지방경제의 안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정되며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우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3.3 사유화의 형태와 실적

- 현재 루마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유화 방식이 허용되고 있음.
- 주식양도를 통한 사유화 방법은 직접협상 이외에도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 ① 공모방식(public offering) - 신주공모보다는 주로 구주매각에 집중
- ② 주식/부채 스왑(debt-equity swap)
- ③ 공개매수(take-over bid: TOB)
- ④ MEBO, 혹은 종업원 주식소유계획(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 - 양자는 거의 유사한 사유화 방식임.
- ⑤ 전환사채의 발행
- ⑥ 주식시장 혹은 장외시장(OTC: RASDAQ)에서의 거래

- 한편 부동산에 대한 사유화는 대부분 분할상환에 의한 매각 혹은 장기 임대후 인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
 - 장기임대의 경우 임대후 소유권의 환수를 불허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고 있음.
- 대체로 루마니아의 경우 선진 시장경제권의 각종 제도들을 모방하여 도입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화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음.
 - 그러나 자본 및 금융시장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조건 및 인적 자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분의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의 목표로 이해될 수 있음.
- 1997년 8월말을 기준으로 SOF에 의한 상업회사의 사유화 실적을 보면 총 8,761개 기업 중 사유화가 이루어진 기업은 3,862개에 불과함.

- 이러한 기업의 대부분은 실제로 MEBO방식에 의해서 사유화된 기업으로서 산업별로는 주로 소매업, 수송 및 경공업관련 기업이나 농업관련 기업 등 규모가 적고 개인소비와 직결된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SOF의 전체 기업(8,761개사) 중 시장을 통한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의 수는 2,710개사였음.
 - 이 중 실제로 매각된 기업의 수는 1,065개사이며 사유화의 방법을 보면 이중 893개사는 직접협상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172개사는 경매에 의해서 처분되었음(1997년 8월말 현재).

- 사유화된 기업의 주식은 현재 부카레스트의 주식시장이나 장외시장(OCT)에서 거래되고 있음.
 - 그러나 루마니아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4. 향후의 과제

- 현재까지 추진된 루마니아의 사유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까지의 사유화 실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사유화나 혹은 경영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MEBO 등 기술적으로 용이한 부문에 치중해 왔으며 시장기능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화는 저조한 상태임.
 - 특히 주식공모(public offering), 공개매수(TOB) 등 주식시장을 통한 사유화나 주식/부채 스왑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유화는 자본 및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음.
 - 금융기관의 사유화가 진척되지 못한 관계로 기업의 사유화는 물론이며 실물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금융부분의 지원이 미비하며, 따

라서 금융기관의 사유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음.

- 사유화 담당기관간의 역할분담의 불명확, 반복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사유화 정책방향의 변화로 인한 혼선이 계속되었음.
- RA 등 국가경제의 중핵을 이루는 대부분의 전략적 기업은 사실상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사유화가 보다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현재까지 루마니아의 사유화는 단순히 정부 소유지분의 민간이전이라는 사유화의 피상적인 목표에 집중한 느낌을 줌.

- 그 결과 진정한 의미에서 사유화가 지향하는 바, 즉 시장경제의 중핵으로서의 민간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POF에 의한 대량사유화는 사유화된 기업이 바로 부실화됨으로써 국민들의 기초자산 형성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대신 국민들의 실망만 높아진 것으로 지적됨.

- (제한적) 경매에 의한 사유화나 직접협상에 의한 사유화 과정에서도 인수자의 자격을 단순히 서류심사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적격투자자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주의적인 경향의 불식도 중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 기업평가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유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시장에서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 주식이 과잉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 확립문제 등은 향후 사유화될 기업 뿐만 아니라 이미 사유화된 기업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임.

IV. 金融制度의 현황과 정책과제

1. 루마니아 금융제도의 특징

- 동구권의 경제 체제전환국에서 흔히 있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볼 수 있음

- 중앙은행이 금융을 독점했던 “One-tier” banking체제가 민영화, 상업은행화를 통해 “Two-tier” banking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 법제도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EU기준을 따름.
 - 중앙은행이 상당한 감독권한 보유.
 - 정부계 특수은행과 상업은행중 3개는 조기 민영화대상임.
 - 실제 운영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으나, 제도상으로는 부분적으로 한국금융제도보다 앞서간다는 관찰도 가능함. 이는 루마니아가 EU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임.
 - 상업은행은 역시 EU은행관례에 따라 “Universal banking”임. 따라서 증권업무도 취급함.
 - 선진금융의 外形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예금자 서비스가 매우 열악함.
 - 다수의 보험회사가 있으나 손해보험의 비중이 높고 생명보험의 비중이 낮음.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연금제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상당규모의 지하경제(예: 1인당 하나 이상의 직장근무가 거의 관례화)가 존재함.
- 루마니아 정부의 경험 · 지식부족으로 외국의 자문(때로는 상충되는 내용)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경향임. 예로서 앞서말한 “Universal bank”와 별도의 증권회사 병존등 일관성없는 금융제도.
- 높은 인플레하의 낮은 실질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분한 저축

유인마련에 무관심. 예로서, 종합소득과세제도의 조기도입고려.

- 외국인직접투자(FDI)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성장의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전문가에 자문요청사항 불분명함. 보험감독제도와 재보험(Reinsurance)에 관련한 자문을 요망하고 있으나, 그같은 요망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음.

2. 중앙은행(NBR, National Bank of Rumania)

- 1929년부터 BIS가입 중앙은행이었음.
- NBR법 개정을 추진함. EU요구와 1992 Maastrich 협정규정에 따라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명시 (종래 NBR법(1991)의 목적은 국익에 따라 통화신용조정, 화폐가치보존, 생산·무역·물가·고용의 변동완화, 경제성장·복지의 증진이었음)
- NBR의 독립성
 - 국회에 최종책임을 지며 정부기구로 부터는 절대적 독립
 - NBR총재 임기는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 NBR의 감독권한 보유(1996년시행 감독기능 강화됨. 이하 4항 참조)
 - 은행의 인허가절차, 최저자본금 등 건전성 규제
 - 은행업무의 검사
 - 은행의 외환업무 감독
 - 시정조치요구, 제재(벌금, 임원해직, 인가취소등)
- 이사회

- 구성: 9명(총재 및 3명의 부총재, 5명의 금융전문가, 교수)
- 임명: 국회
- 임기: 6년(EU와 동일), 종전에는 8년이었음

- 금융결제기능

- 은행업계는 물론 증권업계(1997년 6월 9일부터)에 대해서도 “Clearing House”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별도 금융결제기구 설립예정

- 통화관리 중심지표는 M2임.

- 공개시장조작

- 1997년 4월초, 정부채권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활성화 조치로 공개시장조작제도 도입.
- 1997년 4월 17일 재할인 Refinancing credit을 공개입찰하는 방식에서 RP방식으로 대체.
- 조작대상채권은 재무증서(TB)와 국채인 점은 한국은행보다 앞서 있음.
- 공개시장조작의 Primary dealer는 자본금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30여개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계획
- 향후 개인의 경우에도 최저 1억 ROL(루마니아 화폐: lei)이상 국채 구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3. 예금보호기금(Deposit Insurance Fund)

- 1996년 9월 2일부터 상업은행의 개인(natural person) 예금계좌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됨.
- 금융기관 각출금은 자본금의 0.1%, 개인예금총액의 0.3%

- 예금보호한도

- 5천만 ROL(개인당 및 은행당). 단,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반년마다 한도상향조정
- 저축은행(CEC, 이하참조)의 경우, 고객인 서민의 개인예금 100%보증

4. 은행제도

- 국영특수은행: 2개

- 수출입은행(EXIMBANK), 저축은행(CEC, Case de Economii si Consenmnatuni)

- 국가가 대주주인 국영 상업은행: 5개

- 무역은행(BANCOREX), 상업은행(BCR, Romanian Commercial Bank), 농업은행, 개발은행*(BRD, Romanian Bank for Development), 체신은행*(Banc Post). (* 표는 민영화대상은행)
- 정부은행 민영화시, 정부는 “Golden Share”를 보유, 따라서 경영권 이동등 급격한 변화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주력은행은 BANCOREX, 소매중심은행은 Banc Post임.

- 국내상업은행: 24개(계속 증가중임)

- 외국계은행이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금융을 취급함.
- 한국계은행은 Banc Daewoo가 영업중임.

- 외국은행지점: 9개

- Chase Manhattan, Societe Generale 등

- 외국은행사무소 - 5개

- Citibank N.Y등

5. 은행인허가 기준

- 자본금: 최저자본금 500억 ROL(1997년 5월 1일부터), 납입자본금 250 억 ROL(1997년말까지)

- 경영자 자격

- 합리적 사업계획

- 주주의 재무능력

- 개별주주의 지분소유한도 5%이상인 경우 중앙은행 사전승인

- 외국인 지분참여제한 없음. 세계 100대이내은행 향후 은행민영화 참여 허용

6. 건전성 규제

- 규제항목: 자기자금, 거액여신(동일인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0%이내), 대손충당금설정(총여신의 2%), 외환포지션(자기자본의 10%이내), 자본 충실통(8%)등

- 대체로 EU기준을 준용함.

- 중앙은행 감독기능 강화: 1996년 11월 1일 NBR내에 은행위험감시부 (Department of Bank Risks-Monitoring)가 신설되어 감독기능 강화됨. 직

원규모 70명. 주임무중 하나는 불량 은행고객의 black list를 작성. 1997년 3월초까지 184개 회사를 black list에 올림. 은행은 고객이 계정을 개설할때와 신용공여시에 동리스트를 check하도록 의무화.

7. 증권업계

- 감독기구: 증권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 관련정부기관: 중앙은행(NBR), 재무부와 정부소유기금(SOF, State Ownership Fund)등
- 증권결제 및 예탁원(CRCCSD, Romanian Clearing Corporation and Securities Depository)
- 증권투자신탁업: 현재 15개의 투자기금(Mutual funds)이 설정·운영되고 있음.
- 별도로 모험자본(Venture Capital)투자기금, Post-Privatization Fund, RAEF(Romanian American Enterprise Fund)등이 있음.
- Brokerage회사: 140개이상 인가됨.
- Broker-dealer 겸업체제.
- 증권거래소개설(1995년 11월). 상장회사는 당초 7개사에서 최근 70여개로 증가, 이중 1부종목(1st Class) 20개, 2부종목(2nd Class) 50여개.
- 거래소 상장요건: 등록자본금의 15%이상 최소 600명이상 주주가 분산 소유, 최근 2년간 흑자경영등.

- 장외 거래시장(RASDAQ, Romanian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 Automatic Quotation)도 전산거래체제로 운영됨. 거래종목 60여개.

- 외형으로는 선진국형 증권시장제도이나 실적은 아직 후진국 수준임.

8. 보험업계

- 감독관청: 재무부내에 보험감독국(SOIRA, Supervisory Office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Activity)이 1992년 2월 1일 발족.

- 보험회사: 개혁이전에 1개사가 있었음. 개혁이후 급속 신장. 즉 1995년 말 44개사가 1996년말 47개사(신설 6개사, 인가취소 3개사)로 증가.

- 외국계 비중: 47개사중 29개사(62%)가 외국계.

- 생손보의 비중: 보험료수입기준으로 보면 생명보험 9.7%에 불과하고 손해보험 90.3%로 압도하고 있음. 생명보험의 비중이 낮은 것은 구 사회주의체제의 연금제도때문임. 손해보험중에서는 자동차보험(전체의 27%), 화재보험(14%), 자동차제3자책임보험(11.8%), 해상보험(9.0%)등의 순위임.

- 47개사중 생명보험인업체는 31개사, 그중 보험료산정자격인업체는 13개사, 기타는 보험계리업무취급 자격미비.

- 대형회사위주: ASIROMSA(총보험료의 47.6%), ASTRASA(9.9%)등으로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3.1%에 이룸.

- 국영회사비중: 국영보험사의 보험료수입비중이 1996년 57.5%로서 1995년의 66.4%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압도적임.

- 보험중개사: 1996년말 현재 보험중개등록회사가 223개로서 1995년말 대비 22개사 증가
- 보험감독상황: 1996년중 17개사에 대하여 입점검사 실시. SOIRAG 감독 규정, 회계 및 세무규정등 위반여부를 검사. 일부 민영은행과 투자기금의 부도에 따른 금융신용질서의 혼란 발생. 보험사의 유동성을 2개은행이상에 분산 예치하도록 조치함.
- 보험법 개정: EU보험법기준과의 조화와 보험감독기구의 전환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말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절차를 밟고 있음.

9. 중요정책 과제

- 루마니아도 현재 IMF Stand-by Agreement에 의한 신용수혜국으로 한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유럽인 자존심을 고려 정책의 시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임.
- 금융부문의 주요정책과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음.
 - 거시경제지표안정: 년중물가상승율 150%를 두자리숫자(예: 20%대)로 안정요.
 - 국내투자: 저축을 외자도입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임. 이를 국내저축을 제고하는 방향전환이 불가결의 조건임.
 - 현재 민간저축형태가 외화(일인당 1년중 환전 500달러한도, IMF 8조국 가입으로 곧 철폐되면 심화예상)와 금등 귀금속임을 감안하여 국내화폐자산(은행예금등)형태의 저축을 유인해야 함.
 - 현재 고려중인 종합과세는 국내저축이 제고된 다음 도입하도록 연기권고 바람직(졸속도입시 지하경제 확대 전망).
 - 은행서비스 개선: 예금인출시 수수료(1%)징수, 인출자금의 지출명세 자료 제시요구, 높은 송금수수료(3%) 징수 등을 개선하여야 은행 이

용고객이 증가할 것임.

- 주관 없이 (때로 상반되는) 외국자본에 이끌리는 경향의 자제 필요.
- 정부기구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가 어려움.
-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요망됨.
-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특히 재보험제도와 관련감독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었으므로 다음 방문시 이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V. 무역과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1. 기본정책 방향

- 루마니아는 70년대이후 GATT 회원국이었으며 1994년에는 WTO의 회원국으로 됨. 그 뿐만아니라 루마니아는 1995년에는 EU가입이 좌절되었으나 장차 EU가입이 가능하도록 무역 및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를 EU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유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루마니아는 또한 CEFTA(중앙유럽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므로서 장차 회원국간 무역장벽의 계속적인 제거도 약속하고 있음.

2. 무역제도

- 수입에 대한 數量的規制(QRs)는 보건 및 國家安全등과 관련되는 제한된 品目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自由化 됨.
- 수출에는 관세가 없으며 수입관세도 많이 引下되어 현재 평균관세율은 약14%로 추정됨. EU와의 합의에 따라 2003년까지 EU로 부터의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 과거에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특히 높았는데 이것도 현재에는 평균 22%로 인하된 상태임.
- 수출진흥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상품수출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신용장을 매개로한 정상적인 수출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음.
- 루마니아의 산업 및 무역정책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외무역진흥을 위한 對企業서비스 업무는 루마니아 대외무역센타(RFTC)에서 담당하고 있음. RFTC는 정부기관으로서 무역관련 정보자료의 축적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KOTRA와 같이 해외지점망을 통한 수출상품의 사장개척 활동은 아직 없는 것 같음.

3.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제도

- 외국인 투자는 신규사업에 대한 단독 또는 합작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형식의 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법의 보호를 받고 또한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루마니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Romanian Development Agency에서 담당하며 따라서 모든 외국인 투자는 이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모든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인정되고 어떤 업종에든 투자가 허용됨(단 환경악화 없는 경우).
-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등 부동산 소유도 인정됨.
- 외국인 투자의 국유화, 몰수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는 公共利益상 불가피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을 법에 明示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계류등 시설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외국인 투자사업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에 대한 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면제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후 첫 2년간 15%의 이윤세를 부과함(국내기업의 사업소득세율은 38%).

- 外國人 투자금액이 US\$5백만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에 추가해서 15%의 이윤세를 징수하는 기간을 5년간 연장함. 그리고 수입원 자재에 대한 감면도 3년간 연장하되 이 기간에는 관세의 50%를 감면토록 함.
- 또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US\$ 이상이면서 공업분야에서 국산화비율이 60% 이상이고 제품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등록이후 7년간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를 제공하고 또한 처음 이윤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단 생산활동 개시후 7년을 초과못함) 소득세를 면제함.

- 이러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인해서 1994년 이전의 낮은 수준에서 출발해서 급속히 증가한 결과 97년 7월말 현재 외국인투자 누계액은 약 26억US\$에 달함. 이중 국가별로는 235백만\$를 투자한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별 최다 투자자는 자동차, 조선 및 은행업종 등에 투자한 大宇그룹임.
- 大宇의 루마니아 자동차공업 진출은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 이였으나 최근 루마니아의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Dacia와 現代자동차 간의 기술제휴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현지진출 합意는 좁은 루마니아 市場에서의 한국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자초할 것으로 보임. 루마니아 정책당국은 한국인간의 출혈경쟁으로 루마니아인이 혜택을 볼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함.

